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운전자격에 미달하는 사람과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년 1월 16일 공포, 2025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요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의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의 절차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요건(안 제2조제2항 신설)

드론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 전력에 따른 종사제한 기간(안 제14조의2 신설)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에 따른 종사제한 기간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소지죄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0년으로 정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와 범위(안 제14조의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그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요청서에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서를 첨부하여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를 정하고, 시·도 경찰청장 등은 조회 요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종사제한 해당 여부만을 확인하도록 함.

라.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4 제2호자목 및 차목 신설)

소화물배출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종사제한을 확인하였음에도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3. ~ 11. 28., 12. 03. ~ 1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화물의 집화·배송에 드론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드론의 이용과 관련하여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할 것
2. 화물의 집화·배송에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법 제40조의4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제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화물의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법 제19조의2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제14조의3(중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 영업점이 요청하는 경우

가. 영업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확인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자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9호의2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법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제9호의3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생략) <u><신설></u>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u> ”이란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u> 1. 화물의 집화·배송에 드론을 <u>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드론의 이용과 관련하여 「항공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할 것</u> 2. 화물의 집화·배송에 실외이동로봇을 <u>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법 제40조의4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8. 화물의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u>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u>
② (생략) <u><신설></u>	

<신 설>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종사의 제한) 법 제19조의 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

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신 설>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제14조의3(중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서류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

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 영업점이 요청하는 경우

가. 영업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

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

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

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② (생략)
<신설>

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
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
류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
업자 또는 영업점의 확인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
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
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
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연 락 처	(044) 201 - 4158